

요양(의료)급여비용 자율점검제 관련 재안내

- 중앙회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율점검제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2021년 자율점검제 실시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.
- 자율점검제는 **착오 청구의 개연성이 단순·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항**에 대하여 그 내역을 요양기관에 안내하고, 이후 **요양기관이 자체점검을 통해 요양(의료)급여비용 반납** 등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하며,
- **성실히 자율점검 결과를 신고한** 요양기관의 경우 **현지조사 및 행정처분(업무정지 또는 과징금) 면제 적용**을 받을 수 있어,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기관의 적극 참여가 필요합니다.
- 이에 **자율점검제 관련 주요사항***을 안내 드리오니,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* 자료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식 블로그(https://blog.naver.com/ok_hira/222180834092)

※ 2021년 자율점검제 실시 중

- **(점검사항)** 한방급여약제 중 구입내역 대비 청구내역 많은 약제 관련 점검(요양(의료)급여 비용 청구내역과 실제 구입내역 일치여부, 실제 투약여부 등 점검)
- **(세부사항)** 협회 홈페이지 건강보험-보험공지사항(206. 한방급여약제 구입·청구 불일치(제 2차) 자율점검제 시행 안내)을 통해 확인 가능 (<https://url.kr/tns8km>)
- **(문의처)** 심평원 자율점검부(033-739-5906, -5941, -5935, -5933, -5926, -5945, -5914, -5946)

사전예방 중심의 요양(의료)급여비용 ‘자율점검제’



건강한 의료공급자를 보호하는 ‘자율점검제’가
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.

20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1. 자율점검제란?

자율점검제는 착오 청구의 개연성이
단순·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하여
그 내역을 요양기관에 안내합니다.
이후 요양기관이 자체점검을 통해
요양(의료)급여비용 반납 등 자율적으로
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


20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2. 자율점검 절차



청구현황
인지

심평원 · 영양기관

- 청구·심사정보 등 종합분석을 통해 청구현황 인지
- 영양기관 스스로 잘못된 청구 확인



대상
선정·안내

심평원

- 자율점검 계획 수립, 대상 선정
- 자율점검 대상 영양기관에 안내

2. 자율점검 절차



자율점검
실시

영양기관

- 영양기관 스스로 청구 내역 점검
- 자율점검결과 제출



결과 통보
및 환수

심평원 · 공단

- 제출된 점검결과 확인
- 정산심사
- 결과통보

3. 대상항목 & 대상기관

✓ 대상항목

착오 청구의
개연성이
단순·반복적으로
확인되는 청구 사항

※의료계와 협의하여
항목 선정

✓ 대상기관

착오 청구의
개연성이 있어
점검이 필요한
요양기관

※청구 현황 분석을 통해
기관 추출

4. 신고서류 & 제출기한



신고서류

자율점검결과서
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
착오청구 환수 동의 관련서류



제출기한

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
안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
※필요 시 30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

5. 자율점검 체계의 흐름



성실히 자율점검을 실시한 기관은
현지조사 및 행정처분(업무정지, 과징금)이 면제되며,
 허위자료 제출 기관 등은 현지조사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.

6. 자진신고

- 
인지

자율점검 항목에 대하여 외부요인 없이
 요양기관 스스로 착오청구 인지
- 
제출 서류

자진신고서<현지조사지침[서식 제 15호]>,
 자진신고 세부내역
 ▲ 해당 서식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및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
- 
제출 방법

FAX : 033-811-7426
 등기우편 :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30
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
 포털 : 요양기관업무포털(<http://biz.hira.or.kr>)

자진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내용 및 대상기간에 한하여
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.

※ 거짓청구 유형에 해당될 경우, 외부요인이 확인된 경우 등은 면제대상에서 제외